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스위원회 설치·구성 근거 마련〉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367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14
1. 전기위원회 개요	14
2. 가스 분야 위원회 해외 사례	15
3.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기관·단체 주요 의견	1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성원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26.
3. 회부연월일 : 2024. 9.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수입 및 도매 그리고 배관을 통한 공급 시설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1984년 전부개정 당시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스공사가 각종 가스시장 규정 및 공공 인프라 사용여부를 사실상 임의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가장 중요한 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총괄원가 산정을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제3기관의 중립적인 관리, 감독 내지는 심의 없이 가스공사 자체 산정 절차만 거치고 그 내용도 비공개로 되어 있어 검증 시스템 자체가 없음.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국가스공사가 수립한 수급의 계획과 실제 수요량의 오차 폭이 점차 커지면서 가스 인프라 사용의 효율성 저해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가스공사가 산출하는 천연가스 공급비용의 세부 항목이 불투명하고 그 절차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 요금 결정 구조를 투명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가스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각종 가스 공급 인프라 사용에 관한 사항, 총괄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가스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가스 시장이 효율성을 높여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6부터 제10조의20까지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도시가스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시가스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스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가스위원회 위원의 자격, 가스위원회의 기능과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6부터 제10조의20까지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2장의4 가스위원회</u>
<u><신설></u>	제10조의16(가스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시가스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도시가스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스위원회를 둔다. ② 가스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3명은 상임으로 한다. ③ 가스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가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스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u><신설></u>	제10조의17(위원의 자격 등) ① 가스위

현행	개정안
	<u>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u> <u>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u> <u>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u> <u>3.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가스공학이나 전기공학, 이와 유사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리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u> <u>4. 가스 관련 기업의 대표자나 상임임원으로 5년 이상 있었거나 가스 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u> <u>5. 가스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u> <u>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u> <u>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 <u>④ 가스위원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가스위원회 위원장이 궐위되어 후임자</u>

현행	개정안
<신설>	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⑤ 임기가 끝난 가스위원회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집행한다. ⑥ 가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0조의18(가스위원회의 기능 및 재정) ① 가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2. 제10조의7에 따른 등록의 취소나 영업장 폐쇄, 사업의 정지에 관한 사항 3. 제10조의9에 따른 대상물량 제한 및 조정, 수입 제한에 관한 사항 4. 제10조의15에 따른 등록의 취소나 사업의 정지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6. 제18조제5항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의 변경 명령에 관한 사항 7. 제18조의2에 따른 천연가스 수급

현행	개정안
	<u>계획에 관한 사항</u> 8.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의 승인 <u>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u> 9. 제24조에 따른 가스사용의 제한에 <u>관한 사항</u> 10. 제39조의2에 따른 시설공사계획 <u>의 승인에 관한 사항</u> 11. 제39조의6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u>의 공동이용에 대한 심의 및 승인 에 관한 사항</u> 12. 제39조의8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 <u>정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u> 13. 도시가스사업법 등 천연가스 관 <u>련 법령 및 규정의 심의에 관한 사항</u> 14. 가스도매요금 총괄원가의 산정 <u>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u> 15. 다른 법령에서 가스위원회의 심 <u>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u> 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 <u>청한 사항</u> ②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 <u>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가스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스위원회에 재 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0조의19(의결정족수) 가스위원회의</u> <u>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u> <u>의결한다.</u>
<신설>	<u>제10조의20(운영 및 처우) 이 법에 규</u> <u>정된 것 외에 가스위원회의 조직·</u> <u>운영과 위원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u>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법에 따르면 가스도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¹⁾,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²⁾.

또한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³⁾,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배관시

1)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사업의 허가) ① 가스도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공급규정)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가스의 수급계획) ①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스수급계획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해당 연도를 포함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설비용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설비능력의 범위에서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에게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⁴⁾.

그런데 가스도매요금 산정, 가스 공급시설의 사용 등과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승인 과정에 도시가스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사용자의 권익 보호 및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⁵⁾를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시가스의 경우에도 “가스위원회”를 설치하여 가스도매요금 산정 및 가스 공급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도시가스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가스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음.

4)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설비능력의 범위에서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탁용천연가스사업자에게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전기위원회 개요는 참고자료 1 참조

이에 개정안은 가스도매사업의 허가, 도매요금 등 공급규정의 승인, 천연가스 수급계획의 수립,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도시가스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가스위원회의 설치·구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가스위원회가 설치·운영될 경우 도시가스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사용자의 권익 보호 및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반대의견과 민간LNG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의 찬성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 도입, 수급계획, 가스요금, 배관시설이용 등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미 학계,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가스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국내 가스산업의 구조⁶⁾, 일반소비자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6) 에너지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는 해외국가의 경우 에너지 산업이 개방되어 자유화된 시장을 규율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하는 특징이 있으나, 국내 가스산업은 도소매 시장이 독점화된 구조로 일부 자가소비용에 한하여 직도입을 허용하는 등 차이가 있다는 것임.

[가스분야 자문위원회 운영현황]

구 분	위원회명 (설치)	법적 근거	운영현황
도입	도입자문 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없음	(구성) 학계·업계·연구계 등에서 가스, 전력, 자원개발, 재무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 (운영) LNG 계약체결 추진 등 필요시 수시개최 (기능) LNG 계약체결 절차 및 계약조건 적정성 검토
수급계획	가스수급 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없음	(구성) 학계·업계·연구계 등 가스·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경제 전문가로 구성 (운영)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년마다 수립) 관련 필요시 수시 개최 (기능) 수급계획 방향, 정책사항 결정 및 실무위 원회 총괄·조정
가스요금	도매요금 심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없음	(구성) 정부·학계·업계 등 민관 합동으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 (운영) 도매공급비 조정(매년 5월)을 위해 매년 개최, 도매요금 제도 변경 등 필요시 개최 (기능) 천연가스 도매요금 조정사항, 천연가스 도매요금 제도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심의
	도매공급비 검증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없음	(구성) 정부·학계·업계 등에서 회계, 법률 등의 전문가로 구성 (운영) 도매공급비 산정시 검증(5월 이전)을 위해 매년 개최 (기능) 도매공급비 산정 내용의 적정성 검증
배관시설 이용	배관망이용 심의위원회 (한국가스공사)	없음	(현황) 정부·한국가스공사·민간업계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 (운영) 필요시 수시개최 (기능) 가스배관시설 이용에 관련한 사항 심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기획재정부는 가스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의사결정이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거나 민감한 기업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위원회 조직의 특성상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가스위원회의 업무가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업무와 구분되는 독자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⁷⁾에 따른 별도의 행정위원회 설치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임.

반면에, 민간LNG산업협회는 한국가스공사가 가스도매사업과 가스배관시설 운영을 독점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 중심으로 가스배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가스배관시설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가스위원회 설치가 필요하고, 해외 주요국⁸⁾도 독립적 기구를 운영하고

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가스 분야 위원회 해외사례는 참고자료 2 참조

있으므로 가스위원회에서 가스요금 총괄원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이상을 종합해 보면, ① 가스요금 산정, 배관시설 이용 등은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②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가스공사에서 운영 중인 가스 분야 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는 관계 행정기관 등을 구속하지 않으며, 자문위원회의 자문이 법률상 필요적 절차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⁹⁾, 가스 분야 주요 정책의 심의 및 조정을 위한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전기산업의 경우 전기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전기위원회가 설치되었는바¹⁰⁾, 아직 전면적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지 않은 가스시장에 전기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가스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가스위원회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및 민간LNG산업협회 등의 여러 찬반의견을 종합적으

9)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은 법률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내부결재, 한국가스공사 내부규정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10) 2000. 12. 23.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기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을 발전·송전·배전·판매로 세분화하고, 전력거래는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규칙 제정과 시장감시를 위해 전기위원회를 설치하였음.

로 고려하여 가스 분야의 공공성과 민간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57

※ 참고자료

1. 전기위원회 개요¹¹⁾

□ (목적)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위해 설치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01.4월 발족

주요기능

- ① 발전사업 허가 및 전기사업 양수·분할·합병·주식취득 인가 등 심의
- ② 전기요금 등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인가 등 심의
- ③ 전력시장운영규칙 제·개정 심의
- ④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시 및 전기사용자 권익보호
- ⑤ 전기사업자 간의 분쟁 재정(의결) 등

□ (구성) 전기위원회(본회의), 3개 전문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

• 전기위원회 (본회의)

- 구성 : 9명(위원장 포함)
* 비상임위원 8, 상임위원(에너지산업실장)
- 임기 : 3년(연임 가능)
- 임명 : 산업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 위촉
- 회의 : 월 1회(셋째주 또는 넷째주 금요일, 서울)

• 전문위원회(3개)

- ① 법률·분쟁조정
- ② 전력계통 및 신뢰도
- ③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 구성 : 각 위원회별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 임기 / 임명 : 2년 / 위원장이 위촉
- 기능 : 중요 안건 사전 검토·자문 등
- 회의 : 필요시

• 사무국 (정원 8, 현원 8명) (사무국장(3·4급) 1명, 사무관 4명, 주무관 3명)

- 산업부 소속기관
- 안전 예비검토 등 위원회 사무처리

1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 가스 분야 위원회 해외 사례¹²⁾

국가	명칭(근거법)	위원회 구성	주요 기능
미국	연방에너지 규제위원회(FERC) (연방전력법 402조)	위원회(5명), 조직(약 1,500명) ↳ 대통령이 임명	사업허가(수력) 州間 도매/망요금
	州政府 공익사업위원회(PUC) (개별 州법에 근거)	- 위원회(3~7명) ↳ 주지사 또는 주의회가 임명 또는 선거로 선출 - 조직(州별로 상이, 100~1,500명)	사업허가 소매요금(일부) 표준요금(일부)
영국	가스전력시장규제청(OfGEM) 가스·전력시장위원회(GEMA) (가스법 1조/전기법 1조)	위원회(10명), 조직(약 971명) ↳ 위원장 및 위원: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 임명	사업허가 표준요금 망요금
독일	연방네트워크기구 (BNetzA) (에너지산업법)	- 위원회 ↳ 기관장 및 부기관장(2명) : 대통령 임명 - 조직(10개 실무부서, 11개 결정위원회)	사업허가 망요금
일본	전력·가스시장 감독위원회(EGC) (전기사업·가스사업법)	- 위원회(5명), 조직(5개부서, 약 130명) ↳ 경제산업성 장관 임명 - 경산성 산하기관(가격 규제 최종 권한은 경산성 보유)	규제요금

1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3.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기관·단체 주요 의견

구분	부처·기관·단체명	의견
가스위원회 반대	기획재정부	• 가스위원회 설치 시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행정안전부	• 가스위원회에서 수행 예정인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구분되는 독자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위원회 활용 필요
	한국가스공사	• 개정안에 제시된 가스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대한 승인권이 산업부장관에게 있어 가스위원회 설치 시 ‘옥상옥’ 문제 발생 • 국내 가스시장은 공기업인 가스공사와 대기업 주도 직수입자간의 경쟁 구도이며, 민간사업자가 위원으로 참여시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2,000만가구에 이르는 민수용 수요자 편익 침탈 우려 •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하는 국내 수급구조에서 정부와 가스공사는 수급계획, 도입계약, 저장시설 확충 등 국가 전체적인 수급의무를 책임지나, 가스위원회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더라도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가스공사에 전가될 우려
	도시가스협회	• 별도 위원회 신설보다 기존 위원회 내실화 필요 •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시설공사계획 승인, 공급계획 변경, 공급규정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로써 기존 법률과의 충돌 및 도소매 이원화된 도시가스산업 체계를 손상시킬 우려 • 위원회 구성시 심의 안전에 직접적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는 민간사업자를 위원으로 포함할 경우 입법 취지와 달리 특정 이해당사자에 유리하게 운영될 우려
가스위원회 찬성	민간LNG 산업협회	• 도매 공급비용 검증 시 제3의 기관 검증이 부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가스위원회에서 총괄원가 및 공급비용 검증을 통해 가스요금 적정성·객관성·전문성 확보 필요 • 사업자간 공정한 배관망 이용을 위해서는 가스도매 사업에 대해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유인이 있는 가스공사보다는 중립 감독기구에서 관련 내용을 심의·승인할 필요